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122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3월 21일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부수업무 신고 기관 : (주)엘지씨엔에스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 : '22.3.16.

3. 부수업무의 내용

○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업무

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6항제3호